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-26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06. 10.

제출자 : 파주시장

□ 개정이유

- 도시개발사업소·혁신분권담당 및 재해·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현장 대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신설 및 정원 조정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 되어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(안 제2조)
 - 총 정 원 : 895 → 929명 (증 34명)
 - 집행기관 : 877명 → 911명 (증 34명)
 - 의회사무기구 : 18명 → 18명
- ※ 신규정원 승인 내역

구 분	계	일 반 직					비고
		5급	6급	7급	8급	9급	
계	34	1	5	8	12	8	
도시개발사업소	20	1	4	7	6	2	
읍·면방재인력	11	-	-	-	5	6	11개읍·면
혁신분권담당	3	-	1	1	1	-	기획담당관실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본문중 “895명”을 “929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“877명”을 “911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한시정원 및 경과조치) 집행기관의 정원중 도시개발사업소 23명과 혁신분권 지원 인력 3명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, 이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895명</u>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877명</u> 2. (생략)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929명</u> ----- ----- 1. ----- : <u>911명</u> 2. (현행과 같음)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1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1. 제정 이유

- 도시개발사업소·혁신분권담당 및 재해·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현장 대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신설 및 정원조정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-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(안 제2조)
 - 총 정 원 : 895명 → 929명 (증 34명)
 - 집행기관 : 877명 → 911명 (증 34명)
 - 의회사무기구 : 18명 → 18명

＊ 신규정원 승인 내역

구분	계	일 반 직					비 고
		5급	6급	7급	8급	9급	
계	34	1	5	8	12	8	
도시개발사업소	20	1	4	7	6	2	
읍·면방재인력	11	-	-	-	5	6	11개읍·면
혁신분권담당	3	-	1	1	1	-	혁신분권담당

3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소의 신설과 혁신분권담당의 설치, 읍면 방재인력 보강계획에 따른 필요한 기구의 신설 및 정원조정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급번 정원의 조정은 도시개발사업소의 경우 신도시 개발과 병행하여 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LG Philips LCD 등 대규모 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 등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한시 기구·정원 승인 신청에 따른 인력이 승인되었으며,
- 읍면방재인력의 경우 재해·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읍면 방재인력 보강계획에 따라서 증원되었고 혁신분권 담당인력은 행정혁신과 지방분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방침에 따른 인력이 보강된 것임.

- 정원 승인에 따라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895명에서 929명으로 34명이 증원되며 집행기관 정원은 877명에서 911명으로 조정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8명으로 변동이 없음.
- 신규 증원되는 정원은 도시개발사업소 20명(5급 1, 6급 4, 7급 7, 8급 6, 9급 2명)이며 읍·면 방재 인력 11명(8급 5, 9급 6명), 혁신분권담당 인력 3명(6급 1, 7급 1, 8급 1명)임.
- 도시개발사업소 인력 20명은 별도의 사업소가 설치 운영되며 혁신분권담당인력 3명은 기획담당관실내 1개팀(담당)으로 읍면방재인력 11명은 관내 11개 읍면에 각각 1명씩 배치될 예정임.
- 집행기관의 정원 중 도시개발사업소 20명과 지난해 7월 승인된 신도시 지원인력 3명을 포함한 23명의 인력과 혁신분권 담당인력 3명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 까지 한시정원임.
- 이상과 같이 급변 정원의 조정은 신도시 건설사업과 각종 택지개발 및 지방산업단지조성 등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이후 가속화 되고 있는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 및 행정혁신 업무추진, 각종 재해의 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, 재해구호 등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.

지 방 자 치 법

제 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1994. 3. 16>

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.